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

2025 .01 .13 , 인사총무팀



서비스 이용 유의사항



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!

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〉

-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- □ 특히, <u>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</u>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🔁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
- ☞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- ☞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소득·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.
- 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- ▶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☞ 19세 미만(2004.1.1. 이후)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신청」 후 조회 가능합니다.
- □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.

사전 안내사항

1. 부양가족 요건

① 배우자 : 나이제한 없음, 소득요건 필요

② 직계존속: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, 소득요건 필요 (부모, 조부모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③ 직계비속: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, 소득요건 필요 ((손)자녀 -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④ 형제자매: 나이요건 [60세 이상, 20세 이하], 소득요건 필요

* 만 60세 이상: 1964.12.31.이전 출생/ 경로우대공제: 만 70세 이상 (1954.12.31 이전 출생)

* 만 20세 이하: 2004.01.01. 이후 출생

*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사라짐 (소득요건 필요)

* 기초수급자, 위탁아동은 형제자매 요건과 동일

* 부양가족 : 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형제자매 등

* 기본공제: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된 부양가족 150만원/1인 (인적공제 신청대상)

2. 공제항목

① 보험료공제 : 기본공제 대상 가능, 납입액 최대 100만원 공제 (장애인전용 보험은 추가 공제 가능)

② 신용카드공제: 부양가족 대상 가능(형제자매 불가),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

③ 의료비공제 : 부양가족 대상 가능, 나이 및 소득 여부 관계 없음! (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 신청 주의)

④ 주택자금공제: 본인만 가능, 부양가족의 주택자금은 공제 불가

⑤ 주택마련저축: 본인만 가능 (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, 무주택자)

⑥ 월세액공제 : 본인 및 배우자(기본공제) 가능, 전입신고 필수

⑦ 기부금공제 : 부양가족 가능,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

공제항목별 제출 서류

공제항목	관련서류	서류발급처	
주택자금공제 관련서류	건물등기부등본 (아래 서류에 주소 있으면 패스)	전자정부 : www.egov.go.kr or 대법원인터넷등기 소 : www.iros.go.kr	
	주택가격확인서 (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)		
의료비공제	진료비계산서, 영수증, 진표비 납입 확인서, 약제비 계산서, 영수증 등		
교육비 공제	교육비납입영수증		
주택마련저축	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		
주택임차차입금	주택자금상환증명서 / 등본/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		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/ 등본/ 분양계약서 or 매매계약서 (5억 원 이하 부동산必, 부부공동명의 가능)		
(개인)연금저축공제	연금납입영수증		
장기주식형저축 공제	장기주식형 저축납입영수증		
법정기부금공제	기부금영수증 또는 확인서	해당 기부단체	
장애인보장구	보장구 구입 영수증 (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)	판매자	
안경, 콘텍트렌즈	영수증 (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)	안경점	
정치자금공제	정치자금영수증 (당비영수증, 정액영수증, 무정액영수증)	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정당	
종교단체기부금	기부금영수증 및 주무관청서류 (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)	해당종교단체	
인적공제	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	전자정부 : www.egov.go.kr	
강애인공제	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		

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

04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급여 총급여 면봉(급여 + 상여 + 수당 + 인정상여) - 비과세소특 (-)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(1명당 연 150만원 공제) 근로소득금액 추가공제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 (-) 특별소득공제 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(이월분) (-)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청년형 포함) 종합소득 과세표준 (×) 기본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)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(기본공제대상자녀(7세이상), 출생·입양) 결정세액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 납세조합공제 (-) 기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

*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i . 의료비 공제

- ① 중복신청 불가
- ② 나이, 소득여부에 관계 없음
- ③ 본인 총급여 3% 초과금액부터 세액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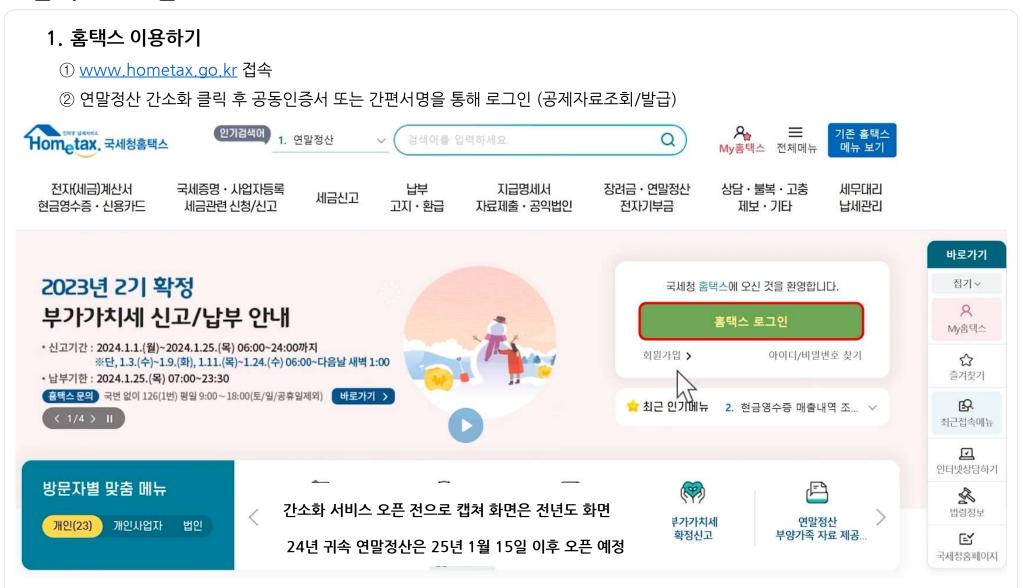
ii 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

- ① 소득공제: 세액이 계산되기 전 근로소득금액을 공제
- ② 세액공제: 세액이 계산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

iii. 4대보험료 공제

① 과세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홈택스 로그인



연말정산 간소화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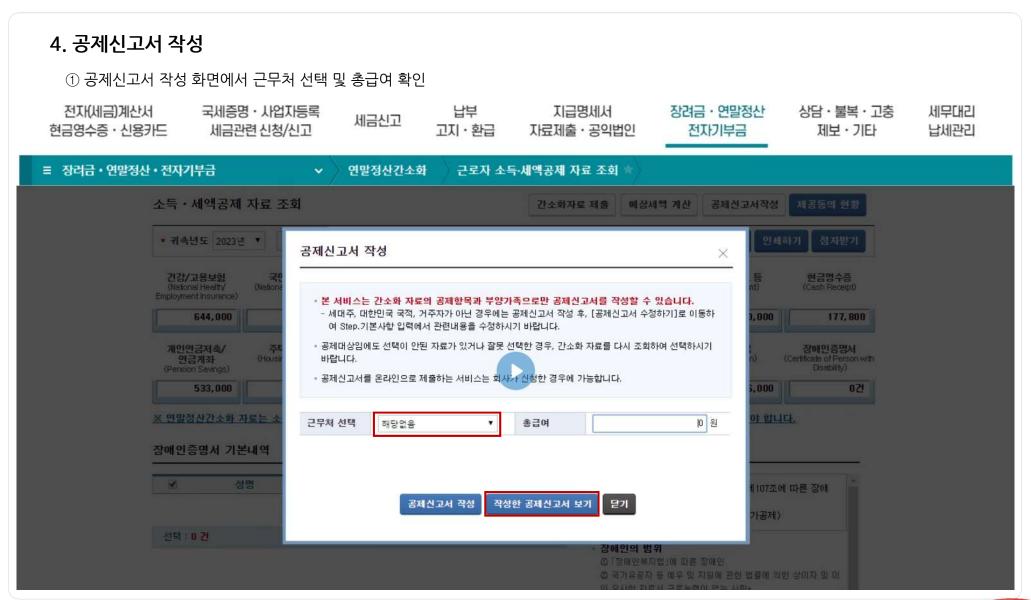
2.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 · 세액공제 자료 조회

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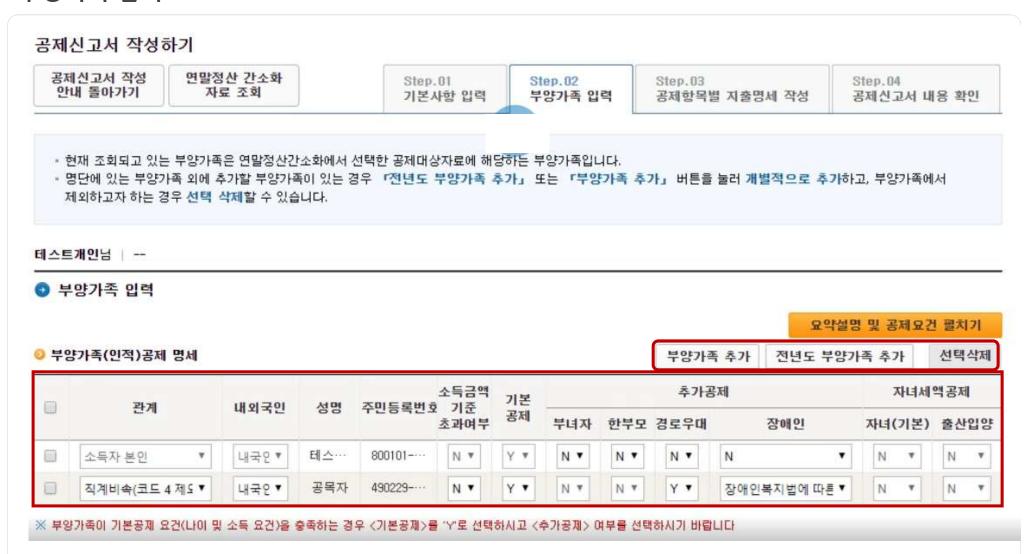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



기본사항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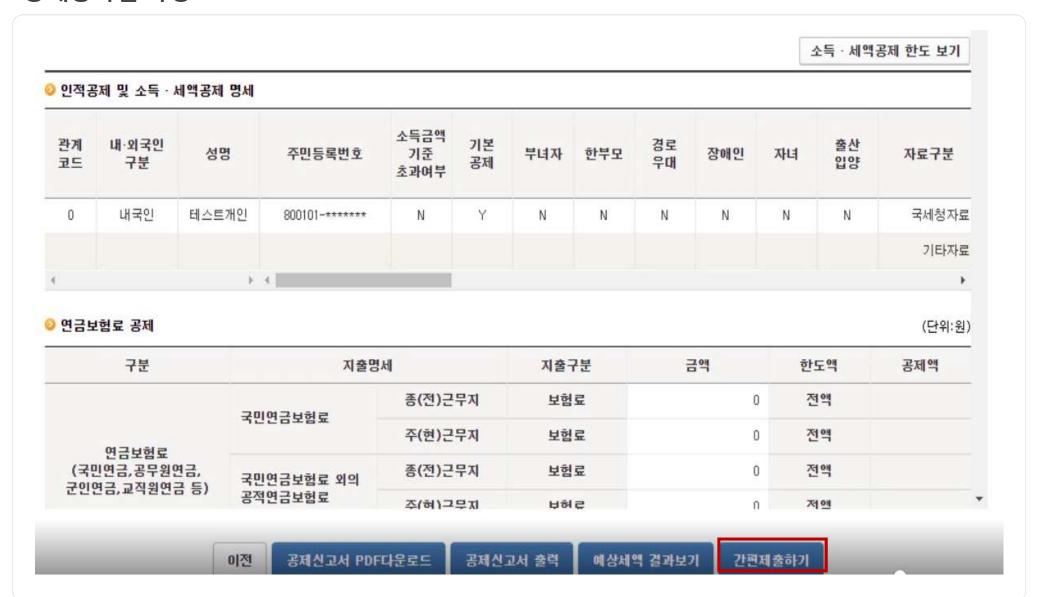
부양가족 입력



공제항목별 작성

	소득공제 명세 (단위: 원				
공제항목명		①간소화자료 (국세청자료)	②기타 자료 (직접수집자료)	합계(① + ②)	
연금보험료공제	田 수정	228,000	1,000,001	1, 228, 001	
- 국민연금보험료		228,000	1, 000, 000	1,228,000	
- 국민연금보험료외 공적연금보험료		0	1	1	
특별소득공제		644,000	0	644,000	
- 국민건강보험	田 수정	500,000	0	500,000	
- 고용보험		144,000	0	144,000	
-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	田 수정	0	0	0	
- 대출기관		0	0	.0	
- 거주자		0	0	0	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	田 수정	0	0	0	
바인연금저축	田 수정	112,000	0	112,000	
^{주택} 마련저축	⊞ 수정	272,000	0	272,000	
신용카드 등	田수정	12,606,800	0	12, 606, 800	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田 수정	0	0	.0	
성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田 수정	64,000	0	64,00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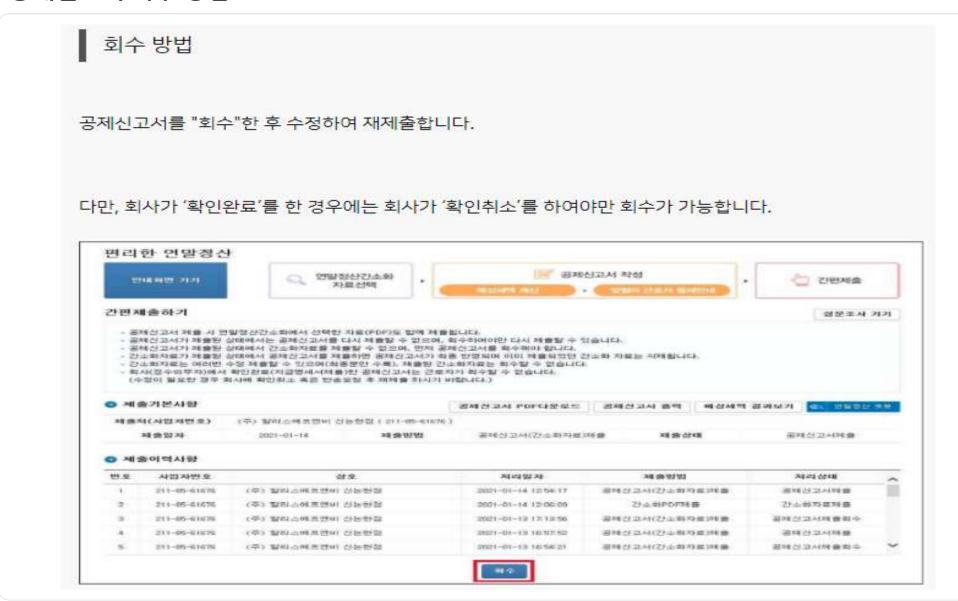
공제항목별 작성



공제신고서 제출



공제신고서 회수 방법



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▷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(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근로기간에 해당)
 - ex) 전직장에서 2024.01.01 ~ 2024.02.15 근무 , 현직장에서 2024.07.01 ~ 2024.12.31 근무
 - → 근로제공기간: 1월~2월, 7~12월 (3월~6월은 공제 안됨)
- ※ 특별소득공제항목 중 <u>보험료, 주택자금, 신용카드, 소기업,소상공인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공제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만 소득 공제 가능</u>
 - 단, 기부금 개인연금저축, 투자조합 등 공제,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
 - → 위 항목은 근로제공기간 해당월만 선택 후 조회하여 제출
- ▷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자료 외 서류 제출
 -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
 - * 의료비, 안경 구입비용, 난임 시술비, 기부금 영수증 등
 - ② 인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
 - ③ 2024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
 - * 신입사원의 경우 제출 의무 없음

▷ 참고사항

- ①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불가
- ② 2024년도 개정세법은 첨부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참고
- ③ 문의사항은 인사총무팀 유송이 대리 (031-5187-8023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

연말정산 Q&A

많이 묻는 질문	답변	
	1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: 총급여 년 500만원 이하 2.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: (종합소득금액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) 년 100만원 이하 ※ 종합소득금액 = (이자·배당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) ex)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: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 2024년도에 퇴직하여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불가,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천만원이상 : 기본공제 불가, 공적연금(국민연금,공무원·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)액이 516만원 초과 : 기본공제 불가,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이 1,500만원 초과 : 기본공제 불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,000만원을 초과 : 기본공제 불가, 1세대 1주택 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: 기본공제 불가	
	<mark>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도 합산하여 신청 가능</mark> 합니다. 단,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등의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.	
- 기본공제 나이 제한 요건은?	본인 및 배우자: 없음, 직계비속: 만 20세이하 (2004.1.1이후 출생), 직계존속: 만 60세이상 (1964.12.31 이전 출생), 경로우대공제: 만 70세이상 (1954.12.31 이전 출생)	
-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	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해서 50만원의 세액공제 적용 (결혼세액공제는 일생에 한 번만 적용함)	
- 자녀세애고제는 어떻게 저요되나요?	1.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중 <mark>만 8세 이상(2016.12.31이전 출생</mark>)인 자녀가 있는 경우: 자녀 1명: 15만원, 자녀 2명: 35만원, 자녀 3명 이상: 35만원 + (기본공제대상 자녀 인원수 - 2명) x 30만원 2. 2024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: 출산·입양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, 둘째면 50만원, 셋째 이상이면 70만원	
- 연도 중 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요?	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	
- 부녀자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	1. 기혼여성 : 총급여액 41,470,588원 이하인 경우 2. 미혼여성 : 총급여액 41,470,588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	
- 한부모가족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	배우자가 없는 근로자(남녀 불문)로서,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	
-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?	기본공제대상자(장애인 포함)라 할지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.	

감사합니다!

